

#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5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2. 4.  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의 기한 사항을 규정하고, 주민들의 자치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일부 용어의 자구 수정(안 제2조)
-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한 규정 신설(안 제12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2

5. 현행조례 : 붙임 3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※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'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' 생략

7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4

## 【붙임1】 개정조례안

###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1항 중 “청구(이하 “주민조례청구” 라 한다)를” 을 “청구(이하 “주민조례청구” 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청구의 수리·각하 결정 및 통지)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2.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【붙임 2】**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) ①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(이하 “청구권자” 라 한다)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<u>청구(이하 “주민조례청구” 라 한다)</u>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·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</p>	<p>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청구(이하 “주민조례청구” 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12조(청구의 수리·각하 결정 및 통지)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</u></p>

제12조 (생략)

2.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제13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